협약에의한학과운영규정 5-1-14

규정번호 5-1-14
제정일자 2007.2.1
최근개정 2024.7.24
개정차수 2차 개정
관리부서 평생교육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명지전문대학(이하 “우리대학”이라 한다) 학칙 제23조의13 규정에 의거 우리대학과 실업계고, 산업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맞춤형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우리대학에 설치하는 협약에 의한 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규정에 의거하여 협약에 의해 설치된 학과(이하 “협약학과”라 한다)라 한다.

제2장 협약학과의 운영

제3조(설치과정) 협약학과는 전문학사 학위과정으로 설치 운영한다.

제4조(협약학과의 운영) 협약학과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우리대학이 실업계고, 산업체 및 지방자치단체등과 체결하는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협약학과의 명칭
2.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정원에 관한 사항
5. 협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6.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에 관한 사항
7. 학기 및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8. 협약학과 설치·운영 기간에 관한 사항
9. 협약학과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당해 협약학과 등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

제5조(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교육과정의 편성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 또는 유사학과의 교육과정을 준용하여 운영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일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자격 및 선발) 협약에 의해 선정된 해당고등학교의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으로 선발한다.

제7조(모집정원)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사업에 따라 1개 학과(20~40명 내외)로 한다.

제8조(등록) 학칙 제23조의13 규정에 의한 협약학과의 경우 학생이 부담하는 등록금 총액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학기 및 수업) ① 학기는 2학기로 나누어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로 하고, 제2학기는 9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 일 까지로 한다.

② 1학점 취득은 15시간 이상 수업을 기본으로 한다.

③ 수업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수업·현장실습수업·원격수업 및 계절제수업 등으로 운영한다.

④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절 학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설치·운영기간) 협약학과의 설치·운영기간은 협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2주 이내로 한다.

제12조(성적평가) 학업성적은 A·B·C·D·F급의 분류로 하며 D급 이상을 급제로 하고 F급 일 때는 낙제로 한다. 다만, F급일 때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시험에 응할 수 있다.(개정 2024.7.24.)

제13조(성적의 취소) 기 인정된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일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제3장 휴학 · 제적

제14조(휴학) 협약학과의 설치는 실업계고, 산업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에 의하여 그 학과 및 과정이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휴학은 허가하지 않는다. 다만, 그 학과 및 과정이 계속 유지되어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휴학을 허가할 수 있으나, 복학 시에 해당학과가 계약에 의해 지속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한다.

제15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할 수 있다.

1. 산업체를 퇴직한 자 (단, 협약업체로의 이직은 예외로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 부진한 자
3.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못한 자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칙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대학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학칙) <2009.2.26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 <66> <생략>

<67> 협약에의한학과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④, 제12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68> - <102> <생략>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12조)